

지역난방 공동주택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 (참고용)

(2023. 7. 1 기준)

가. 급탕열요금

급탕단가(원/TON)는 순수하게 시수를 가열하는데 소요된 열량에 대한 비용이므로 세대 급탕온수미터기의 검침유량은 세대 수도계량기의 검침유량에 합산하여 수도요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며, 기타 약품비, 동력비등은 해당 관리비목으로 부과함.

- 시행령 제23조 제3항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' 중 급탕비를 말함

나. 급탕공급온도

세대급탕 사용온도는 온수와 시수를 세면기에서 섞어 대부분 40℃ 전후로 사용하는데 시수온도가 계절별로 다르므로 급탕공급온도도 계절별로 동계(10,11,12,1,2,3월)에 55℃이하, 하계(4,5,6,7,8,9월)에 50℃이하로 운영하고 급탕배관의 열손실을 줄여 세대부담을 완화함.

다. 난방 사용열요금

○ 난방열량계가 설치된 세대의 난방열요금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이 책정 부과함.

- 단위가 kWh일 경우(1 kWh ≒ 860 Kcal)

지역난방 사용요금(원/Mcal;부가세 포함) × 1.1(공동난방비*) × 0.86Mcal/kWh

* 공동난방비는 설비보온 상태, 난방 및 급탕 퇴수, 부대시설 사용, 계량기 고장 등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난·급탕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(10%내외)하는 총체적인 사항.

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난방비 등 기타비용으로 구분 계측하여 분리부과 할 수 있음.

- 단, 상기의 계산자료는 공동난방비가 10% 발생된 APT의 예시자료로써, 공동주택 세대 열 사용패턴 및 설비운영 상태에 따라 단지별로 달리 부과할 수 있음.

[세대 열요금 분배단가]

2023. 7. 1 기준

(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)

구 분	지역난방 사용요금 (Mcal당)	세대난방 사용요금		세대급탕 사용요금 (m ³ 당)	
		난방열량계가 kWh일 경우	난방열량계가 MWh일 경우		
계절별 차등요금	동절기(12월~익년2월)	114.988	108.769	108,769	7,757
	춘추절기(3~5 ,9~11월)	109.467	103.540	103,540	6,163
	하절기(6~8월)	98.499	93.168	93,168	5,635
연간 단일요금		111.735	105.700	105,700	상기적용

주)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주택용 사용요금 단가로 산정된 금액이며 세대 급탕사용요금은 단지마다 공급온도 및 시수온도가 다르므로 사용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